#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55

발의연월일: 2024. 8. 5.

발 의 자: 박정현ㆍ이광희ㆍ박홍배

박지원 · 김현정 · 민병덕

신정훈 · 서미화 · 김동아

모경종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약류에 관해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화약류를 주로 사용하는 주요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는 판매소의 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 부분의 구조·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판매업의 허가와 변경허가의 조항을 분리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시설·설비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또한, 화약류의 사용ㆍ폐기ㆍ운반에 관한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경찰청장에게 기술적인 부분은 정하여 고시해 화약류 사용·폐기·운반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함(안 제1 8조제4항, 제20조제5항 및 제26조제4항).

법률 제 호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제6조의3"을 각각 "제6조의2, 제6조의4" 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및 제1항 전단 중 "총포 안전관리"를 각각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총포 안전관리"를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총포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로 한다.

- ③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화약류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 2. 화약류 제조, 판매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 관련 허가 현황 및 적 정 허가수준 유지 방안
- 3. 화약류제조보안책임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 관련 면허 현황 및

적정 면허수준 유지 방안

- 4. 화약류 제조, 판매 및 화약류저장소 관련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 5. 화약류 안전관리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제6조의3 및 제6조의4로 하고, 제6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판매업의 변경허가 등) 판매업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구조
·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
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매업자가 그 판매소의 구조·시설 또는 설비 중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경찰청장이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조의2제1항"을 "제6조의3제1항" 으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경찰청장이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제6조의2"를 "제6조의3"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본문 중 "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6조의2 본문,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6조의2 본문,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총포(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6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신고를 한 자

제70조의3 중 "제70조의2"를 "제70조의2(제1항제2호의2는 제외한다)" 로 한다.

제71조제1호 중 "제6조의2제1항·제2항"을 "제6조의2 본문(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의3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총포(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6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신고를 한 자

제7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의2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제3호로 한다.

1. 제6조의2 단서(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제73조제1호 중 "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조(적용의 배제) ① 제2조제3 제3조(적용의 배제) ① --항제3호아목 및 자목의 장난감 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 용 불꽃신호기에 대해서는 제6 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 --제6조의2, 제6조의4---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부 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다만, 장난감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에 관하여 제4조, 제9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 의 경우에는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6<u>조의4</u>-----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제3조의2(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 수립) ① 경찰청장은 관계 행 리 계획의 수립) ① -----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 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신 설>

③ 경찰청장은 <u>총포 안전관리</u> <u>④ -----총포 및 화약류</u> 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시행


- ② (현행과 같음)
- ③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화약류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화약류 제조, 판매 및 화약 류저장소 설치 관련 허가 현 황 및 적정 허가수준 유지 방 안
- 3. 화약류제조보안책임 및 화약 류관리보안책임 관련 면허 현 황 및 적정 면허수준 유지 방 안
- 4. 화약류 제조, 판매 및 화약 류저장소 관련 안전검사에 관 한 사항
- 5. 화약류 안전관리 관련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안전관리-----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 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경찰청장은 <u>총포 안전관리</u>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 ⑤ 경찰청장은 제1항의 <u>총포</u> <u>안전관리</u> 계획을 집행하기 위 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u>⑥</u> (생 략)

제6조(판매업의 허가) ① 총포· 저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 격기·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u>.</u>
⑤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u>⑥</u> <u>총</u> 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u>.</u>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네6조(판매업의 허가) 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판매소의 위치 • 구조 • 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 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 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종 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② ~ ④ (생 략) <신 설>

임대업 허가 등) (생 략)

--. <후단 삭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판매업의 변경허가 등) 판매업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 ·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 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도검 ·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경찰청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매 업자가 그 판매소의 구조ㆍ시 설 또는 설비 중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 항을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 · 도경찰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제6조의3(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현행 제6조의 제6조의3(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의 지위승계) (생 략)

제18조(화약류의 사용) ① ~ ③ (생 략)

④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u>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u>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생략)

제19조(취급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 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 자충격기・석궁을 취급(제조・ 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 ・소지・사용・폐기 등을 말한 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총 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영화 또는 연극 등을 위 하여 일시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제6조의4(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의 지위승계) (현행 제6조의3과
같음)
제18조(화약류의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경
 찰청장이 고시하는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취급 금지)
7年(11日 ログリ)
<u>제</u> 6조의3제1항
1. ~ 3. (현행과 같음)
· = - · = - ·

9와 간은)

- 제20조(총포·화약류의 폐기) ① 제20조(총포·화약류의 폐기)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화약류의 폐기는 <u>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26조(화약류의 운반) ① ~ ③ (생 략)
  - ④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그 적재방법, 운반방법, 운반경로, 운반표지 등에 관하여 <u>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u> 기술상의 기준 과 제2항에 따른 화약류운반신 고증명서에 적힌 지시에 따라 야 한다. 다만, 철도·선박·항 공기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제45조(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 처분) ① 허가관청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 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영업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④ (현행과 같음)
⑤ <u>경찰청장이</u>
고시하는
<u>.</u>
제26조(화약류의 운반) ① ~ ③
(현행과 같음)
4
경찰청장
이 고시하는
제45조(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
처분) ①
l

- 1. 2. (생략)
- 3. 제4조·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제조·판매·임대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제5조(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8호(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 8. (생략)

② (생 략)

제4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4조의2 및 <u>제6조의3</u>에 따른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에 대한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상속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

1.·2. (현행과 같음)
3제6조의3
4.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4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u>제6조의4</u>
<u> </u>

에는 양수인·상속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 다. 다만, 양수인(상속에 의하 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 다)이 그 영업의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② (생략)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기 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2. 총포(권총·소총·기관총· 포·엽총·공기총만 해당한 다)에 관하여 제4조제1항·제 3항, 제6조제1항·제2항, <u>제9</u> <u>조제1항</u>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 ② (생략)

제70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기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벌칙) ①
<u>.</u>
1. (현행과 같음)
2
케6
조의2 본문, 제9조제1항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의2(벌칙) ①
•

- 1. (생략)
- 2. 총포(권총·소총·기관총· 포·엽총·공기총은 제외한 다) 및 화약류에 관하여 제4 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 ·제2항, <u>제9조제1항</u> 또는 제 12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신 설>

- 3. (생략)
- ② (생략)
- 제70조의3(상습범) 총포에 관하여 저상습적으로 제70조 및 <u>제70조</u> 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2항·제3항(도검·분 1. -

1. (현행과 같음)
2
<u>제</u> 6조의2 본문, 제9조
제1항
2의2. 총포(권총·소총·기관총
·포·엽총·공기총만 해당한
다)에 관하여 제6조의2 단서
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u>자</u>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의3(상습범)
<u>제70조</u>
의2(제1항제2호의2는 제외한다)
제71조(벌칙)

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제2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제2항(분사기・전자충격기만 해당한다)・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만 해당한다)・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만 해당한다)・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안 해당한다)

<신 설>

<u>1의2.</u> (생략) 2. ~ 8. (생략)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케C코이의 보므/ㄷ거
<u>제6</u> 조의2 본문(도검 ·
<u>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u>
해당한다), 제6조의3제1항ㆍ
제2항
1의2. 총포(권총・소총・기관총
·포·엽총·공기총은 제외한
다)에 관하여 제6조의2 단서
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
<u>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u>
<u>자</u>
1의3.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8. (현행과 같음)
게72조(벌칙)
172年(晉行)
1. 제6조의2 단서(도검·분사기

1. (생략) 1의2. (생략) 2. · 3. (생략)

3의2. (생략) <u>4.</u> ~ <u>7.</u> (생 략)

-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3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 항 · 제2항, 제17조제2항 · 제4 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 제1항 · 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 4. (생 략)
- ·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 다)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4. • 5.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6.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7. ~ 10. (현행 제4호부터 제7 호까지와 같음)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3 및 1. -----제6조의4----

1의2. ~ 4. (현행과 같음)